

# AI 커버곡을 둘러싼 법률 문제: 음성권의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원준\*\*

## Abstract

이 글에서는 AI 생성물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이슈에 관하여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AI 커버곡의 적법성 판단을 위주로 저작권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침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학습의 과정에서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완성된 학습모델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AI가 생성한 가창 합성 음원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에서 그러하듯,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누가 침해 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플랫폼과 이용자의 관계에서 간접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저작물의 비표현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의 해석은 언제나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혁신적 기술에 해당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침해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해석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I. 들어가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출현은 예술의 영역에서 사람만이 가능했던 섬세하고 세밀한 창작 활동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인간의 창작 활동은

\* 본고는 저자가 공간(公刊)한 정원준, "AI 커버곡 사례를 통해 본 생성형 AI의 법률문제", 「산업재산권」, 제76호, 2023과 정원준, "Case Study: AI 커버곡을 둘러싼 권리 침해 문제의 판단기준", 「인공지능법」, 박영사, 2024를 토대로 본 간행물의 취지에 맞게 발췌·재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ljun@klri.re.kr.

모방에 기초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방의 영역은 생성형 모델이 패턴 인식이나 최적화 학습을 통해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딥페이크<sup>1)</sup>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통제와 법적 제재 역시 균형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할 AI 커버곡 쟁점은 음성합성 기술에 토대하여 간단한 음성 샘플만으로도 음성의 특징과 감정표현, 음행 환경까지 다양한 음성 신호를 복제하여 새로운 음성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기초로 한다. 최근 LLM 모델과 Diffusion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 생성 기술은 주어진 가사와 멜로디, 박자 등을 문장으로 입력하기만 하면 AI가 특정 가수의 고유한 창법과 음색을 학습하여 유사하게 표현한 악곡을 생성해낸다. 시장에서는 이미 구글의 '뮤직 LM', 메타의 '오디오크래프트' 등이 출시되어 AI 가창합성 음원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음성합성 기술의 학습 단계에서 음성의 사용이 목소리 주인의 허락없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제작된 AI 커버곡이 음성의 권리자 허락없이 공개되거나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수 비비의 히트곡 '밤양갱'을 아이유가 부른 버전, 가수 오혁이 부른 버전 등이 합성 제작되어 유통되어 인기를 끈다거나, 해외 팝가수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의 노래를 부른 커버곡이 공개 SNS 사이트를 통해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AI 커버곡이 활발하게 제작되는 동시에,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AI커버곡을 제작할 때에는 원저작자로서 커버곡의 작곡가와 작사가, 그리고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사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은 권리임에 반하여 음성에 대한 권리는 명확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엄격한 입증을 거쳐 불법행위 책임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AI 커버곡을 둘러싼 권리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음성권의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상의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1)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라는 의미가 결합된 신조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가짜 동영상·이미지·오디오 또는 제작 프로세스 자체를 의미한다. 딥페이크 용어의 시초는 2017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Deefakes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사용자가 기존 포르노 비디오의 배우 얼굴을 유명 연예인의 얼굴로 바꾼 합성 영상을 포스팅한 것으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딥페이크는 음성합성뿐 아니라,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과 말투 자체를 유사하게 구현하는 것을 지칭한다.

## II. AI 커버곡의 작성과정과 권리 침해요소

### 1. AI 커버곡을 생성하는 방법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법률 쟁점의 검토에 앞서, 음성합성을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작업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시중에 출시된 서비스들을 토대로 AI 음성합성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순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sup>2)</sup>

먼저, ① MR과 보컬을 분리하는 단계, ② 보컬을 리드보컬과 백업보컬로 분리하는 단계, ③ 보컬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변경하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커버하고자 하는 음원의 보컬과 배경음악을 분리하는 작업으로서 GAUDIO Studio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커버하려는 음원을 Vocal, Bass, Drum, Other Instrument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AI 커버곡의 부정확한 음정이나 기계음 등을 보정하기 위해 확보한 보컬 음원에서 리드보컬 파트와 백업보컬의 화음과 코러스, 에코 등을 깔끔하게 분리한다. 마지막 3단계는 본격적으로 보컬의 목소리에 커버곡을 씌우는 단계로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우선 음성모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커버하려는 가수의 음성모델을 직접 제작하거나 이미 만들어 놓은 공개된 음성모델<sup>3)</sup>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는다. 그리고 난 후 다운로드 받은 음성모델을 업로드하여 변환(convert) 처리를 하고, 해당 파일을 1단계에서 분리해 놓았던 Vocal 파트에 업로드하여 합성하고 배경음악과 합치기만 하면 최종적으로 AI 커버곡이 완성된다.

### 2. 각 생성단계별 권리 침해 요소

상기에서 제시된 모든 과정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각 단계별로 타인의 권리 침해가 문제될만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 1단계에서는 커버하고자 하는 음원을 저작권자(작사·작곡·편곡자)와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의 허락없이 보컬과 배경음악을 분리하는 편집을 진행한 점, ② 2단계는 커버곡을 고품질로 제작하기 위해 커버곡의 원곡가수(실연자)의 허락없이 백업보컬과 분리하는 편집을 진행한 점, ③ 3단계에서

2) 해당 내용은 다수의 웹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 Brunch 웹페이지, <<https://brunch.co.kr/@herbeauty/64>>(최종 접속일: 2024. 12. 15.).

3) 이 때 각 음성 모델들 중에서 Epoch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음원을 학습한 모델이므로, 높은 품질의 자연스러운 음성을 제공한다고 한다.

보컬의 음성모형을 직접 제작하거나 누군가 제작해놓은 음성모형을 사용했을 때 커버곡 가수의 음원과 음성을 권리자 허락없이 추출하여 음성합성에 사용한 점이 각각 문제된다.

### 3. 침해가 문제되는 권리의 주체

AI 커버곡 사례를 구성할 때 특정해야 할 권리의 주체로는 '커버곡에 합성하려는 음원 및 음성과 관련된 권리자'와 '커버곡의 원곡에 대한 권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AI 커버곡의 목소리 합성을 위해 사용한 음원과 관련된 저작권자로서 해당 음원의 작사가, 작곡가, 편집자가 있으며, 저작인접권자로는 해당 음원을 가창한 실연자로서 가수와 음반제작자가 권리의 주체가 된다. 만약 음성을 직접 추출하여 사용하였다면 해당 가수의 음성권 침해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커버하려는 원곡에 대한 권리자도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로 나뉘므로 이들로 부터 이용허락 동의를 필요하다.

### 4. 권리 침해의 양태

위와 같은 커버곡 생성 방법을 토대로 할 때 AI 커버곡과 관련된 권리 침해의 양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해당 커버곡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타인의 음성과 음원을 허락없이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침해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최종적으로 산출·완성된 AI 커버곡을 유튜브에 공개하여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을 때의 권리 침해가 각각 문제된다.

## Ⅲ.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한 검토

### 1. 학습단계에서 AI 커버곡 제작 시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 가. 음성권의 인격권적 보호 가능성

먼저, AI 커버곡 사안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인의 권리라기 보다는 유명가수의 음성권으로서 일정 부분 재산적 가치가 있거나 재산적 이용이 가능한 공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음성이 주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인의 음성은 어떠한 성격의 권리로 보호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사람의 얼굴에 초상권이 있다면 목소리에는 음성권이 있다. 2019년 우리 대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음성권이 인격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해당함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이후 최근 일부 판례를 통해 통화 녹음과 관련한 음성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지만,<sup>4)</sup> 그 이전부터도 언론보도를 통해 대화 내용이 공중에 송출됨으로 인한 음성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다루어져 왔다. 가령 방송사 앵커를 지낸 언론사 간부가 낸 음주운전 사건에서 모자이크 없이 방송에 송출하면서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가 인정되나 공인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판례<sup>5)</sup>, 음주단속 적발 사건에서 금융회사 간부가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성 조각이 부정된 판례<sup>6)</sup>, 제보자가 무단 녹음으로 건네준 통화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보도하여 정정 보도 청구와 명예훼손, 그리고 음성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음성권 침해만 인정된 판례<sup>7)</sup>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들에서는 실질적인 침해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 녹음된 대화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속하는지 여부, 최소 침해의 관점에서 음성변조가 필요했는지 등을 주요한 고려요소로 삼았다.

이와 같은 음성권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그 존재가 인정되어 왔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인격표지에 대한 침해가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는 성명, 초상, 음성 등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해당 권리는 인격표지를 대상으로 영리 활동을 통한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격권적 특징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이는 미국의 주법(州法)과 판례법(common law)을 통해 인정되는 소위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권리의 내용과 성격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인격표지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므로, 우리 민법 개정안이 일반인의 인격표지까지 아울러 보호하는 규정인 것과 적용 범주 측면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다. 해당 규정은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에서 기존

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56037 판결. 당시 대법원은 음성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라도 소송을 위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통화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을 통해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 16620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9. 3. 96가합82966 판결.

6)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10. 22. 99나49001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00. 3. 9. 99나43440 판결.

의 인격권 이론의 확장을 통해 인격 표지의 경제적 측면을 보호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의 음성권 침해는 현 시점에서 민법상의 구제를 논하기에는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나. 음성권의 재산권적 보호가능성

2021년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대표발의안, 의안번호-2107440)에서는 ‘초상등재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규정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목소리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매체의 발달로 창작물뿐만 아니라 창작자 자신이 유명해지고 창작물과 함께 창작자의 모습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법안에서는 초상등재산권을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고(안 제126조), 해당 권리의 일신전속성을 긍정하면서 양도 또는 압류나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안 제128조). 이에 의하면 동 법안의 권리 규정은 미국의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성격의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강한 보호가 되지 않도록 양도성이나 담보성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 법원은 다수의 재판례를 통해 그동안 초상, 음성, 성명과 같은 인격적 표지에 대해 개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상 혹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왔다.<sup>8)</sup> 특히 퍼블리시티권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1995년 이휘소 사건<sup>9)</sup>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8) 서울지방법원 1995.6.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특허법원 1998. 9. 24. 선고 98허20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7. 14. 선고 99가합849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9가합16764 판결 등 다수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판결이 존재한다.

9) 서울지방법원 1995.6.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right of commercial appropriation)”로 정의하여 성문법에 규정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처음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판례가 퍼블리시티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타적인 효력을 지닌 권리의 외연과 효과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문의 규정이 아닌 판례에 맡겨두는 것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진일보한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AI 커버곡의 제작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가수의 음성은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는 객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퍼블리시티권이 도입된다면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청구가 명시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위자료 청구 보다는 손해배상액 측면에서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저작권법 개정안은 민법 개정안과 달리 면책 여부에 관하여 함구하고 있는데, 해당 권리가 인격적 이익의 보호라는 특수한 성질의 권리이긴 하나 종국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도입하려는 것임을 감안하면 저작재산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저작권법상의 제한 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 다.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로서의 보호와 적용상 한계

2021년 12월 7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인격표지에 대한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동 법 제2조제1호타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한 것이다. 해당 개정법은 BTS의 초상과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판매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니는 재산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카목에서 규정하는 성과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sup>10)</sup>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입법 배경을 갖고 있다.

이는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온 퍼블리시티권의 법률상 근거를 확보하는 입법으로서 양도나 상속성에 관한 복잡한 찬반 대립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행위규제적 방식은 사실상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칙으로서 권리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권리 창설적 효력이 아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영업상 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극적인 방법

10) 대법원 2020. 3. 26. 자2019마6525 결정.

으로 구제된다. 다만 이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식별표지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적 구성부분에 대한 보호를 우선 목표로 하는 보호 방식임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동 규정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양도 및 상속의 문제를 명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이른바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성과 상속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해석론<sup>11)</sup>을 통해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

끝으로 본 사안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때에는 두 가지 요건을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곧 보호의 대상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인격표지인지”와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전자와 관련해서는 조문상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 볼 때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음성 등의 식별표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수가 유명 가수인지를 따지기보다는 복제한 음성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판례가 대체로 경쟁사업자로서 경업관계에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단순히 유튜브에 업로드한 행위를 경쟁관계에 기초하여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 라. 특색있는 창법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특정 가수의 독특한 창법을 복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sup>12)</sup>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여 사상과 감정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이 표현된 형태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 가수의 특색있

11)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및 상속성에 대하여는 판례나 학설적으로도 여러 견해가 주장되고 있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퍼블리시티권은 영구적으로 존속시키지 말고 인위적인 제한이 필요하므로 권리자의 사망시점까지만 고려하는 견해가 다수이나, 인격설을 취하는 일부 학자는 비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격권 부분은 사망으로 소멸되지만 재산적 이익에 관한 인격권 부분은 상속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연구총서』, 경인출판사, 2013, 319쪽.

12) 이와 같은 스타일 도용 문제가 다루어진 최신 판례로는 Anderson 등의 예술가 집단이 Stable Diffusion 모델에 대해 ‘in the style of’의 방식으로 출력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여 원고의 작품을 학습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측은 예술적 스타일을 복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과 더불어 AI 플랫폼 광고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2023년 10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개인성 부족을 이유로 피고측의 기각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였고, 다만 원고측에서 주장한 직접 침해 주장에 대하여만 제출 자료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et. al. Andersen v. Stability AI Ltd., 23-cv-00201-WHO(N.D. Cal., Oct. 30, 2023)

는 창법과 같이 고유한 예술적 스타일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인지 혹은 음원이라는 고정물에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sup>13)</sup>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회화의 화풍이나 소설의 테마 기법, 제작 기법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이디어 자체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태도이다.<sup>14)</sup> 따라서 가수의 특색있는 창법 역시 누구나 유사한 창법을 자유롭게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고유한 창법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유력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에서도 규정하듯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즉 개인의 인격적 표지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체성을 보호 객체로 하므로 특정 가수의 창법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독특하다면 보호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단순히 AI 커버곡을 생성하여 유튜브에 공개하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해당 규정에 의거해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sup>15)</sup>

## 2. AI 커버곡 산출물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 가. AI 커버곡의 저작물성

AI 커버곡의 원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판단하기에 앞서 AI 커버곡이 저작물인지부터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AI 음성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약관을 통해 창작을 명령·지시한 이용자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즉,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용자에게 귀속된 권리가 저작권인지는 재차 따져보아야 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따라서 개념적 구성 표지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일 것’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성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창작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적인

---

13) 예술적 스타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신서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과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 『Law & IP』, 제13권 제1호, 2023, 24-29쪽을 참고.

14) 서울민사지법 1990. 4. 19. 선고 89가합2928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3415 판결 등.

15) 이미지 생성모델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이는 문헌으로는 신서혜, 앞의 논문, 28-29쪽.

개입 없이 AI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창작물은 기계적 연산을 통해 표현된 산출물로서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견이 없는 통설적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전적으로 AI 시스템에 의해 창작이 주도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AI에 의해 창작된 부분을 제외한 인간의 개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최근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이 “Zarya of the Dawn(새벽의 자리야, 등록번호: VAu001480196)”라는 작품에 대해 총 17페이지 분량의 이미지 생성을 위해 꼬박 12일 동안 1,500여개의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렇게 도출된 이미지를 Photoshop으로 추가 편집한 부분과 삽화 제공을 위해 직접 말풍선을 작업한 부분의 인간 개입을 인정함으로써 저작권 일부 등록을 결정한 사례도 이를 지지한다.<sup>16)</sup>

따라서 AI 커버곡도 이용자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가공과 편집의 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AI 시스템의 주도로 완성된 것이라면, 그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인정이 애초에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서비스 중인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면, 보다 자연스러운 커버곡 생성을 위해 리드보컬과 백업보컬을 분리하는 작업을 제외하면 특별히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만한 부분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컬을 분리하는 작업은 AI 커버곡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술적 조치에 속할뿐 창조적 개성이 투영된 창작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AI 커버곡의 저작물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산출물이 다른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다.

#### 나.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전술한 것처럼 AI 커버곡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커버곡의 원곡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별개의 쟁점이 된다. 이 글에서 설명한 AI 커버곡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원곡을 토대로 MR과 보컬을 분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합성하는 등 원곡 음원을 가공·편집하는 단계에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다. 최근 stable diffusion 모델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모델 관련 분쟁이 권리 처리되지 않은 저작물을 학습 목적으로 사용한 쟁점이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음성모델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음성을 무단 사용한 부분과 이하에서 살펴볼 커

---

16) 미국 저작권청은 이와 같은 등록 결정 이후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등록 시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표하였다.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3. 16.

버곡의 원곡 관련 권리자에 대한 침해가 주로 문제된다.

커버곡 원곡과 관련된 권리자로부터 복제, 공중송신 행위 등에 대해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커버곡을 제작하여 공개할 때와 동일하다. 다만 AI 커버곡과 관련해서 특별히 살펴볼 점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나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허락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보통 ‘커버(cover)’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이 발표한 곡을 다른 음악가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반영해 재연주하거나 재가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가창을 커버를 할 때에는 원곡의 MR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실연가가 직접 편곡하여 연주하면서 가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AI 커버곡은 커버곡 원곡에서 보컬 부분을 분리하여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생성형 음성모델을 통해 생성한 다른 가수의 합성음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이는 음원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보컬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러한 변경 과정이 저작권권으로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혹은 저작재산권으로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동일성유지권은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외면적 형식을 개작(adaption)하더라도 내면적 형식이 유지되는 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sup>17)</sup> 그렇다면 AI가 커버한 음원이 정신적인 내면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된다. 통상적으로 음악저작물의 경우 구성 양식, 악장과 박자 등을 내면적 형식으로 보는데, AI 커버곡은 보컬의 음성 부분만을 분리하여 다른 합성음성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외면적 형식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나, 기존의 해석론에 따르면 음원의 내면적 형식은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보컬이 인간에서 AI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정신적인 질서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동일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또 외면적 형식을 삭제하거나 추가, 변경하는 등의 왜곡행위(distortion)로 인해 내면적 형식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본 사안에서 보컬 부분을 컴퓨터가 처리한 AI 음성으로 대체한 것을 음원 자체에 대한 왜곡행위로 판단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가치나 목적을 불문하고 동일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므로 동일성을 상실하면 곧바로 권리의 침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대부분의 AI 커버곡들은 일반 공중이 그 내용과 형식을 오인할 정도로 동일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는 결국 저작자가 사안에 따라 입증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다만 AI 커버곡을 어느 수준으로 변경하였는지, 그에 따라 저작자의 명예와 명성을 해할 우려는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동일성 유지에 대한 판단은 얼마든지 달

17)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280-281쪽.

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침해가 성립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인정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도 당연히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가 나뉜다.<sup>18)</sup> 판례의 경우에도 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판결<sup>19)</sup>과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 판결<sup>20)</sup>들로 나뉜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내면적 형식을 해치는 왜곡행위가 존재한다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는 발생할 수 있다.

AI 커버곡 제작은 원곡에 편곡과 연주, 변형 등을 가하는 것으로서 개작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히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취득함이 바람직하다.

#### 다.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한 플랫폼의 기술적 조치

AI 커버곡의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로서 작곡가와 작사가가 있으며,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가수와 연주자)와 음반제작자가 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원 권리자 모두에게 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 구체적으로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저작권 정보의 허위 등록)과 동일성유지권(곡을 변안하는 경우 등),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업로드 게시행위), 공중송신권(공개를 통한 공중 이용에의 제공), 2차적저작물작성권(멜로디를 새로 입히거나 변안하는 등 적극적인 개작 행위를 통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수준으로 2차적저작물 활용하는 경우)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 밖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도 별도로 문제가 된다. 다만 개인이 저작권자를 일일이 접촉하여 이용허락을 허락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은 보통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는 집중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식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Content ID'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도화하여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고 있

18) 오승중,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462-465쪽;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283쪽 등은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는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9판, 세창출판사, 2015, 213-214쪽.

19)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20) 서울지법 1998. 5. 29. 선고 96가합48355 판결; 서울고법 1998. 9. 25. 선고 98나35459 판결(이 사건 상고심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31520 판결).

다. 해당 기능은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자동 식별을 통해 해당 영상이 다른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해당 콘텐츠가 다른 권리자의 침해를 구성함으로 인해 Content ID Claim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 권리자가 침해물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하거나 제한받게 된다.<sup>21)</sup> 즉, Contents ID 등록사용자의 설정 옵션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내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보통 커버곡의 원작자와 신규 콘텐츠를 올린 창작자의 수익을 공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대체로 원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원 저작권자가 수익의 전부를 가져가고, 원곡에 편곡과 연주를 가미하여 2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정 비율을 정하여 수익을 분배한다.

결론적으로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관련된 권리자 모두의 허락을 득할 필요가 있으며, 그 허락을 구하는 방식은 플랫폼상의 제도를 이용하거나 혹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3. AI 커버곡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인가의 여부

끝으로 AI 커버곡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이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플랫폼이 저작물을 학습한 경우나,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커버곡을 상업적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에 제한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다.

현재 TDM 면책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on use)’에 해당하는가이다. 이는 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표현적 이용(expressive use)이 아닌 비표현적인 이용(non-expressive use)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기준으로서 공정이용 해당 여부의 판단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미국에서 형성된 판례 법리에 의하면,

21) 다만 유튜브의 Contents ID 기능은 형식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ID 등록시스템에 음원의 저작권 정보를 본인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음악저작물의 패러디적 이용에 관하여 판시한 Campbe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정이용의 고려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며 문화 산업과 실용적 기술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형량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2)</sup> 특히 제1요소인 ‘이용 목적 및 성격’과 관련하여 변형적 이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판시하면서 변형성이 클수록 상업성 등의 중요도가 낮아진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AI 커버곡 사례에 적용해보면, 변형성은 Campbell 사건에서 인정된 패러디 목적의 사용 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정이용은 당연하게도 상업적 이용인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그러한 상업성이 해당 저작물을 직접 판매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변형성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2요소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웹상에 공개된 저작물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미적 향유라고 하는 예술적 의미가 덜하므로 공정이용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제3요소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개별 시스템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학습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학습을 통해 유사 침해율을 낮추도록 설계하였느냐가 해당 요소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끝으로 시장에서의 영향 기준은 대체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될수록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창작자의 일자리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음원 시장에서 AI 커버곡이 해당 가수의 가치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할지 혹은 오히려 해당 가수의 음악과 노래 실력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해당 요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해 보건대, 해당 사안에서 변형적 이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용된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와 이러한 저작물 학습을 통한 AI 가창합성 음원서비스가 시장에서 기존 음악 시장을 대체하는 영향력이 있는지 혹은 오히려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는지 등이 향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2)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1994).

## IV. 결어

### 1. 추가 입법에 대한 과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음성 침해에 있어서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현행법인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은 그 규율상의 한계로 인해 권리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입법의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대응책으로서 앞서 검토한 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과 같은 별도의 권리를 신설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이 가진 양면적 성격 때문에 물권과 채권으로 이분화된 민법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회의적이다.<sup>23)</sup> 따라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 유명인의 식별표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이를 저작자의 권리로 규율하는 것이 권리의 특성과 존속기간 등을 설정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즉, 권리자에 종속되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되 개별 요건을 부가하여 양도와 상속에 따른 이전을 합리적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살펴본 많은 쟁점 중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제한이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제한이 가능하다는 주장<sup>24)</sup>이 있다. 그러나 두 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저작권 제한 사유는 저작권법 내에서도 재산권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검토의 의의와 시사점

이 글에서는 AI 생성물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이슈에 관하여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AI 커버곡의 적법성 판단을 위주로 저작권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침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학습의 과정에서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완성된 학습모델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AI가 생성한 가창 합성 음원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23) 한지영,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2016, 659쪽.

24) 박준석,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최근의 비판론에 대한 논리적 재반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4호, 2015, 103쪽.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에서 그러하듯,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누가 침해 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플랫폼과 이용자의 관계에서 간접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저작물의 비표현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의 해석은 언제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혁신적 기술에 해당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침해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해석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다양한 해석론은 추후 구체적인 사법 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다른 법리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 글의 이해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연구총서』, 경인출판사, 2013.
-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 박준석,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최근의 비판론에 대한 논리적 재반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4호, 2015.
-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9판, 세창출판사, 2015.
- 신서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과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 『Law & IP』, 제13권 제1호, 2023.
- 오승중,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 정원준, “AI 커버곡 사례를 통해 본 생성형 AI의 법률문제”, 『산업재산권』, 제76호, 2023.
- 정원준, “Case Study: AI 커버곡을 둘러싼 권리 침해 문제의 판단기준”, 『인공지능법』, 박영사, 2024.
- 한지영,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2016.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3. 16.
- Brunch 웹사이트, <<https://brunch.co.kr/@herbeauty/64>>(최종 접속일: 2024. 12. 15.).